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현황 및 관리



노 철 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조사 연구팀장〉

우 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공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국토 공간이 공업단지, 항만, 도로, 주택단지 등으로 전용되어 왔고 그에 따라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산녹지가 잠식되면서 우리 고유의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놓 이게 되는 등 국내의 생물다양성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 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적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생물다양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과 국가능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생물자원의 남획과 환경오염 등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자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친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특별한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지정되고 관리되며 조절되는 일정한 지역을 보호지역(Protected Area)으로 정의한다면 세계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한 보호 지역은 각 국가마다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 환경과 그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 규정한 자연과 자연자원을 분류하는 기준 즉, 유엔리스트(United Nation List of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IUCN의 구분기준은 1980년대 까지는 세계의 유산, 국립공원 및 동등 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생물학적 보호지역 등 4개의 범주로 구분, 기준을 설정하여 왔으나 1993년에는 보호지역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10개의 범주로 세분하여 보호지역 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인간이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더 이상의 생물권 파괴를 막기 위하여 1971년 유네스코가 시작한 정부간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의 주요사업중 하나인 생물권 보전계획은 자연 생태계와 유전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인데

동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의 주요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안하여 유네스코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설악산 국립공원 373km²와 점봉산 남쪽 20.49km²가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 부처의 업무성격과 관련법, 보호지역의 속성과 목표, 보존과 이용의 정도에 따라 세분, 중복 지정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제도는 크게 국토계획적 측면에서의 보전지대와 생물다양성 내지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의 보호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국토계획적 측면에서의 보전 지대는 생물권 보호지역이라기보다 현재와 같은 급격한 토지개발 추세, 즉 과열, 과잉의 토지 이용과 장래의 토지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한 국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본 관리 접근 방식에 의한 상호 경쟁적 국토수요의 효율적 조정에 의한 국토 보전 계획이라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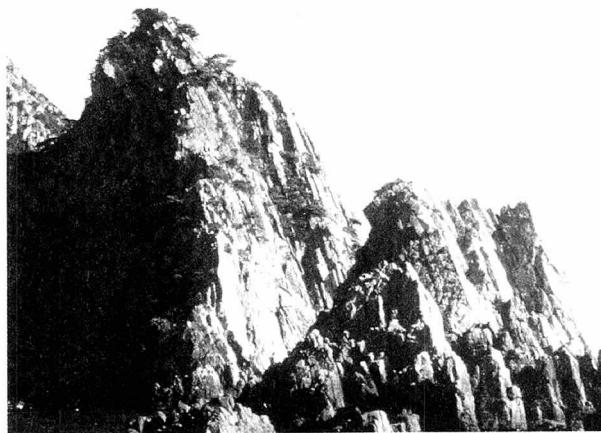
있으며, 이는 주로 국토 건설 관련 법규, 즉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수도법,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법 등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 등 구획 설정에 의한 공간 계획으로 실현되고 있다.

한편, 종다양성 및 생태계와 경관보호를 위한 현지 내 보전정책의 측면에서 설정된 보호지역은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 공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천연기념물 보호구역), UNESCO의 MAB에 의한 생물권 보전지역,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 보호구역 등이 있으며 각 보호지역의 관리 주관 부처도 환경부, 내무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문화체육부, 산림청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보호지역 중 특히 국립공원 구역은 지형 경관이 빼어날

보호지역 명칭	관련법(지정권자)	지정목적	지정현황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건설교통부 장관)	자연경관,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보전	면적 : 8,694Km ² (2,302Km ² 는 해면)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생태계보전	8개소(99.8km ²)
자연공원 (내무부장관)	자연공원법 (내무부장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 지의 보호 및 지속 가능 한 이용 도모	국립공원 : 20개소(6,473km ²) 도립공원 : 20개소(239km ²) 군립공원 : 27개소(239km ²)
문화재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재 보존으로 국민 문화 향상 도모	282개소(693km ²)
생물권보전지역	UNESCO의 MAB	생물다양성 및 자연경관 보전	17개소(393km ²)
조수보호구역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산림청장)	야생조수보호	5077개소(113,190ha)
천연보호림	산림법	천연수목의 보호	1347개소(139km ²)



립공원의 홍도
지구 2개소
17,961ha가 지
정 관리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
립공원은 한반
도의 자연생태

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 및
희귀 생태계 등 자연자원이 잘
보호·보존·분포된 곳으로서 자
연생태계 질서유지와 생태환경
파괴를 막는 기능과 가치를 지니
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범주로 취급
되고 있다.

국립공원구역은 전체가 국토이
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 지역
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
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8개소 99.8km^2 중에도 지리산 국
립공원 구역 20.2km^2 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
기념물보호구역 5개소 $36,370\text{ha}$
중 설악산 국립공원과 다도해 국

계의 대부분을 대표하고 있는 생
태학적으로 매우 의의가 큰 보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
역에 대한 정밀한 생태적 조사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실시
한 자연자원 조사도 주로 고등생
물에 대한 국지적 조사와 종 목록
작성의 수준에 머물러 그 구체적
현황을 명확히 밝힌 바가 없어 국
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국립공원지역은 자
연의 보존상태가 대단히 양호할
뿐만아니라 대규모의 산림과 해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온난대
성기후를 고루 갖추고 있어 식물
및 동물상이 다양하고 종다양성이

풍부하며 특히 희귀, 멸종 위기, 한국 고유 동·식물이 대규모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립공원의 구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총 서식 동물종 중 포유류의 약 75%, 파충류·양서류의 약 70%, 조류 약 71%가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희귀·멸종위기 동물 역시 환경부에서 지정한 특정 동물 53종 중 45종, 천연기념물 53종 중 37종, 자연보존협회 선정 140종 중 84종, CITES 규제종 114종 중 55종 등 127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척추 동물군에 대하여는 명확한 서식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악된 것 이지만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곤충, 거미류 등 무척추동물 및 하등동물이 포함될 경우 서식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1987년 이후에는 국내외적으로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금까지 국립공

원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생태적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미 훼손된 공원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전 지향적 국립공원 관리기조가 정립되고 생태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립공원 기능 중 자연생태계 보호기능, 학술적 연구 자료 제공기능, 자연교육장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국립공원관리는 크게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시설 관리(Facilities management), 이용자관리(Visitor management)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관리란 산봉, 기암괴석, 폭포 등의 자연 경관과 동·식물 등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자원, 공원구역내의 유적, 사찰 등의 문화자원 등 각종 공원자원을 조사·분류하고 자원의 특성에 따라 보호, 보전, 이용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제반 관리 수단을 말하며, 탐방객관리(이용자관리)는 공원 이용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각종 시설과 자원을 이용하여 인간적 활동을 하므로써 공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정한 수단을 동

원하여 관리하는 것이며, 시설관리란 탐방객에게 필요한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리수단을 의미한다.

오늘날 공원관리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러한 세가지 관리 대상을 어떻게 하면 생태적 관리 개념 하에 두느냐 하는데 있다. 즉 지금까지 경관 내지 문화자원에 치중하여 왔던 자원 관리도 생태계를 포함한 공원자원 전체를 어떻게 하면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 접근시키는가 하는 것이며 이용자 관리와 시설관리 역시 생태적 이용자 관리, 생태적 시설관리라는 측면에서 공원관리의 수단과 방법을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공원관리의 개념에 있어서도 과거의 개발 지향적 내지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모호한 공원관리 이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보전을 전제로 한 생태적 공원관리 이념 하의 실행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국립공원 구역 내의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자원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인

식하고 이를 자원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생태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용자 관리 측면에서는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수단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친숙도 증대를 위한 자연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생태 학습관 설치 운영, 자연 학습장과 생태 탐방로 등의 조성으로 지금까지 국립 공원 내에서의 먹고, 마시고, 노는 탐방행태를 생태학습 탐방행태로 개선하여야 한다.

공원시설 역시 탐방객의 편의 제공 목적으로 최소화하고 시설계획도 생태적 고려를 거친 계획으로 재수립하는 한편 시설 설치시에는 색채, 형식, 사용자재 등을 엄격히 설정하여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생태적 시설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온 도로, 주차장, 휴게소, 공중변소 등의 탐방편의 시설 투자도 이제는 훼손지 복구사업, 등산로 정비, 수목원 조성 등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